

食品等の輸入要領

李 能 宰

〈保健社會部 衛生制度課〉

1. 머릿말

食品等を輸入할 경우에는 두가지의 特別法 즉 식품위생 全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食品衛生法과 모든 物品의 輸出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貿易去來法('87.7.1 이후에는 對外貿易法으로 代替됨)의 適用을 함께 받게 된다.

오늘날의 경제사회가 複雜多岐함에 따라 經濟關係法令도 복잡하기 마련이며 보기에 까다로운 면이 많으므로 두가지 法令을 함께 檢討하며 理解한다는 것은 결코 容易한 일이 아닐 것이다.

一般인들이 이 두가지 法令의 規定에 의한 輸入要領을 理解하고자 할 경우, 商工部에서 이들 法令 이외에도 藥事法, 檢疫法 등 各種 特別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統合하여 告示한 「統合告示」를 보면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輸入과 관련된 食品衛生法의 대강과

「統合告示」중 食品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해설하여 이 方面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2. 食品衛生法의 概要

食品衛生法은 모든 食品(다만, 藥事法에 의하여 規制되는 醫약품으로서 섭취되는 것은 제외)로 인한 衛生상의 위해방지과 食品의 品質향상을 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1.20일 법률 제 1007호로 制定・公布되었다. 그러나 그 始發은 1911년 朝鮮總督府令 제133호로 공포된 衛生上 有害食物 및 有害物品取締規則이며 이것은 당시 日本 明治 33년(1900年)에 법률 제 15호로 공포된 飲食物其他物品取締에 관한 법률을 모체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食品에 관하여는 일찍부터 법률적인 차원에서 規制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직접 음식으로 共與되는 通념상의 食品 이외에도 食品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서 食品에 첨가(混合・浸潤・기타의 方法에 依하여 사용되는 경우)되는 물질인 添加物과 食品 및 첨가물에 直接 접촉되는 기구와 용기・포장도 同法의 規定에 依한 규격이나 기준등 要件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진열 그리고 수입할 수 없도록 規制하고 있으며, 규격이나 기준 등에 맞는 食品이나 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이하 「食品등」이라 한다)을 제조・가공・조리・운반・저장하거나 수입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자는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保健社會部長官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食品販賣業의 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 등을 수입할 때마다 해・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國立檢疫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食品衛生法에 의한 輸入規制

食品衛生法上的의 수입규제에 관한 내용은 同法(제 4 조부터 제 9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내용은 商工部告示 제 86-23호로 공포된 통합고시와 같다(86. 6. 28일).

統合告示 總則 제 6 조의 제 4 호에 식품등에 대한 포괄적인 輸入制限內容이 있고, 제 5 장 제 36 조부터 제 41 조까지는 食品衛生法에 의한 수입요령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고시의 별표 II에는 해당품목별로 제한내용이 적혀있으나 제 5 장이하는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항에서는 통합고시 제 1 장 總則欄에 규정된 식품등의 수입제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1) 統合告示의 관련 條文

第 6 條(特定品目の 輸出入) 4. (食品 등의 制限)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은 食品衛生法 제 3 조 내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輸入할 수 없다.

- 가. 부패 또는 변질되었거나 미숙한 것
- 나.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부착된 것
- 다.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라. 불결하거나 異物의 혼입 또는 첨가등의 사유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마.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병육 또는 病死한 동물의 肉骨·乳汁·臟器 또는 혈액
- 바.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는 化學的 合成品 이외의 化學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하는 製劑
- 사. 食品衛生法 제 6 조 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거나 인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 解 說

食品衛生法 제 3 조 내지 제 8 조는 腐敗·變質되거나 미숙한 것,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각종 병원균에 오염된 식품, 사람이 계속적으로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지정·고시한 化學的 合成品 이외의 化學적 합성품 등 첨가물 그리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등에 대하여 販賣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진열·보존등 일체의 營業行爲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으로서 수입의 경우도 이들 각 조항에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미숙한 것도 식품 등에 자연적인 상태로 함유되어 있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어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것 등은 예외로 되어 있는데 옛부터 과일이나 채소, 곡류중에는 미숙한 것, 즉, 덜익은 상태의 것을 일부러 채취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우리나라나 일본의 식도락가들이 즐겨 찾는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毒藥物質이 들어 있고 東西洋을 막론하고 옛부터 주부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감자에도 「소라닌(Solanin)」이라는 유독물질이 있으나 그대로 또는 조리나 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널리 使用하는 것이 許容되어 있음이 그 예이다.

病原微生物에 오염되었거나 불결한 것, 이물이 혼입되어 人體의 健康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병육등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의 몸의 전부를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제 1 종 가축전염병 및 제 2 종 가축전염병과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전신근염·전신근육수종·폐혈증·황달(고도로 진행되어 육질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농독증·구간낭충·선

모충증·요독증 및 인체에 유해한 약물·사료 중독증

② 동물의 몸의 병든 부분만을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 염증(각종장기의 농양·근염·충혈 및 울혈을 포함한다)·외상(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종양·심한기형증·방선균증·황달(육질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기생충증·폐기종·수종(폐·근육·심장·횡격막·위장의 경우에 한한다)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적 합성품이란 현재 지정·고시된 「개미산 게라닐(Geranyl Formate)」의 366여종의 化學的 合成品을 말하는데 이 이외의 화학적 합성품이나 그것을 함유한 제제는 식품첨가물로서 수입할 수 없다는 말이다.

화학적 합성품이란 天然物質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가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사용하는 종류와 범위가 급격히 많아지게 된 것이지만 安全性만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적게 사용되는 편이 바람직한 것이다. 안전성이란 비록 실험동물에의 실험일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가지 부문의 生體實驗이 필요한 것인데 완전하고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食品添加物로서의 화학적 합성품은 필요한 최소한의 품목만을 지정하고 그 이외의 화학적 합성품은 食品添加物로서 제조·가공·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保健社會部長官이 지정고시하거나 인정한 규격 및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라 함은 식품 등은 물론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화학적 합성품이라 해도 전술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역시 수입할 수 없는 것이다.

4. 食品衛生法에 의한 輸入要領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나 食品衛生法에 의한 수입요령은 「各種 法律의 規定에 의한 統

合告示」 제 5 장 제 36 조 내지 제 41 조까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하 각 조문별로 열거하면서 해설코져 한다.

第36條(適用範圍) 이 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해설생략>

第37條(食品等 輸入의 特例) 식품 등의 수입은 별표 II의 수입요령에 의해 수입할 수 있으며 별표 II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食品衛生法 제 7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거나, 보건사회부고시 제 8 호(77. 2. 14일) 「食品 및 添加物의 規格基準」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解説> 별표 II에는 각품목별로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요령이 揭記되어 있는 것으로 食品衛生法에 해당되는 품목은 모두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해야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별표 II에 揭記되지 않은 경우란 統合告示의 개정 이후에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1979년도에 258종이던 식품첨가물이 1985년도에는 352종으로 되어 동기간동안 연평균 15종이상씩 증가된 셈이므로 統合告示를 매년 개정하면서 收錄한다 해도 별표 II에 揭記되지 못하는 품목이 매년 10종 이상씩 생겨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품목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거나 인정한 規格基準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保健社會部長官이 규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것은 첨가물 366종, 일반식품 131종, 기구·용기 및 포장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 11종이 있다. 이외의 규격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규격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 식품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동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檢定을 필하면 이를 동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國立保健院과 각 국립검역소 및 市·道保健研究所가 있으며 이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수입식품 등이 상기 규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식품 등의 輸入申告業務를 취급하고 있는 각 국립검역소에서 소정의 검사를 실시한다.

第38條(食品販賣業 申告)

① 식품등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② 食品販賣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營業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 營業申告書(식품위생법 시행령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나. 營業設備의 概要

〈解説〉 食品販賣業의 申告業務處理는 시·군·구의 위생과 또는 위생계에서 수행하며, 同申告書式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식품판매업에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외에도 식육·식용얼음 또는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유산균음료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등이 있다. 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들 식품판매업 어느 것이나 모두 해당되는 共通施設基準과 식품등 수입판매업에만 해당되는 業種別施設基準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食品販賣業의 施設基準

〈공통시설기준〉

가. 판매장 :

(1) 건물은 충분한 내구력이 있어야 하며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주거장소

또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2)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바닥·벽·천정은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져 청소하기 쉬워야 하며 창문·출입구 등에는 쥐 또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기구·용기·포장류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청결한 기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수 :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폐기물 용기 : 내수성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고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로 시설하여야 하고, 환기창에는 쥐 또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業種別 施設基準〉

㉠ 乳類販賣業~㉣ 食品自動販賣機營業 : 생략

㉤ 食品 등 輸入販賣業 :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등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과 구획된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第39條(食品 등의 輸入申告) 식품등의 수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에는 수입화물보관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解説〉 식품 등의 수입신고업무는 각 國立檢疫所 검역과에서 취급하며, 동 신고서식은 별

지 제 4 호 서식과 같다.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기준과 달리 동 품목을 수입하는 자와 동품목의 自家規格을 검정(인정)해준 검사기관만이 알고 있는 것이므로 同檢定書寫本을 제출토록하여 동인정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第40條(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목적 또는 영업상 사용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식품등의 형태 표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무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라. 정부기관에서 직접 수입하는 식품등이나 기타 기증등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위 사항의 식품 등 외에는 수입할 때마다 수입항을 관할하는 檢疫所長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第41條(輸入食品 等の 表示) 수입한 식품 등에는 一般消費者가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의 사항을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의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첨가물

(가) 제품명 :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의 1)을 준용한다.

(나) 업소명 :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영업신고 번호 : 신고관청의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제조연월일 : 6호활자 이상으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또는 각인을 사용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매) 유통기한 : 유통기한을 정하여 제조연월일 바로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 중량·용량 또는 개수 :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의 6)을 준용한다.

(세) 원료명 및 함량 :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의 7)을 준용한다.

(에) 보관상의 주의 :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의 8)을 준용한다.

(재) 반품 또는 교환 :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의 9)를 준용한다.

(צה) 사용 또는 보존기준 :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의 10)을 준용한다.

(캐) 차가기준 및 규격 인정제품 :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의 11)을 준용한다.

2) 기구 및 용기포장

(가) 수입업소명 :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영업신고 번호 : 신고관청의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재질 :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기준 중 2) 기타 기구 및 용기·포장의 (나)를 준용한다.

4. 全體의 要約

식품 등(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을 수입코자 할 때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위생과에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때마다 수입항을 관할하는 檢疫所에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입한 식품 등에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한글로 해야 한다.

이상의 제반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등은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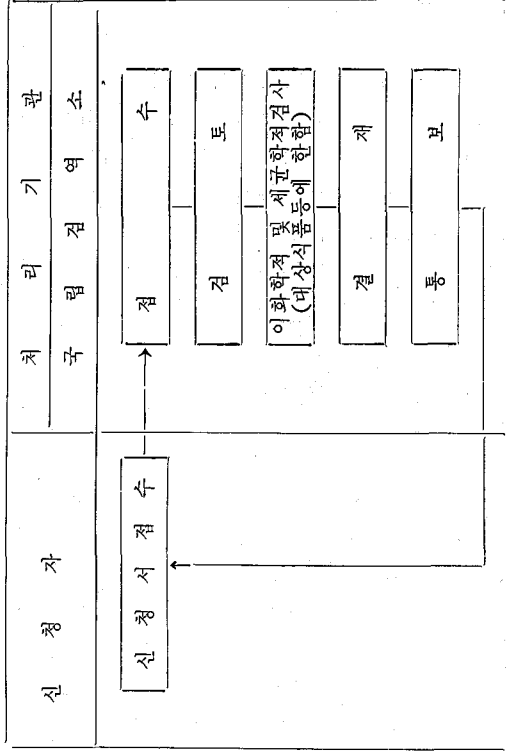
[별지 제 4 호 서식]

(앞면)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수입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 번호		-						
인	주소									
번호	④수입업자 등록번호	⑤상 호								
번 (CCCN)	품명	원산지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용도		
1. 수입일			2. 수출국							
4. 선입일			수출면 및선명					3. 적출항		
7. 수입보 확장도			8. 화물사 고류					6. 수입항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④ 년 월 일 신고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신고번호 : 호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국립○○검역소장										
구비서류 : 뒷면참조										
105-38년 1. 4. 7승인										
190mm×268cm (신문용지 54g/m ²)										

(뒷면)

- 구비서류
1. 수입신고서 2부
 2. 수입허가증사본 또는 수입승인서사본
 3. 내용명세서(송장)사본
 4. 선적서 사본
 5. 식품판매업신고증 사본(판매물 목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발품한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사본(자가기준 및 규격대상 품목에 한한다)
 7. 품목제조허가증 사본(자가소비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외국인용의 식품 등 및 수출용 원자재는 제외한다)
 9. 제품명세서(원재료의 함량이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인용의 식품 등 및 수출용 원자재는 제외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 영업 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⑤ 영업소의 소재지			
⑥ 영업의 종류			
⑦ 영업시설의 개요	별첨		
<p>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판매업(용기·포장류제조업)을 신고합니다.</p>			
		년	월
		일	
		신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정동 1가 11-11		④	
<p>구비서류: 교육필증(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p>			
수		수	
료		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 참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 참조	

3105-68B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81.5.25승인

[별지 제20호서식]

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영업의 종류			
⑤신고 번호	(전화번호)		
⑥영업소소재지			
⑦영업소명칭			
변경 사항			
⑧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⑨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⑩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⑪영업소의 소재지			
⑫변경 사유			
<p>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p>			
		년	월
		일	
		신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정동 1가 11-11		④	
<p>구비서류: 영업신고증</p>			
수		수	
료		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 참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 참조	

3105-31민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81.5.25승인